

제8조 (차량운전자의 자격요건과 책임)

- ① 시설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시설장에 의하여 차량운전이 승인된 자로 한정한다.
- ② 차량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1. 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한 책임.
 2. 차량운행중의 법규위반 또는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일차적 책임.
 3. 차량 내 비치된 차량운행 일지의 기록의무
 4. 차량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행하고 관리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제9조 (차량의 업무 외 사용제한)

직원 또는 외부인이 시설의 차량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시설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제16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92명으로 한다.

제2조 (입소정원 및 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자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모집하며, 등급 외자(일반인)는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시설장의 재량으로 단기적으로 입소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조 (입소모집)

- ①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한다.

제17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 ① 계약 당사자
- ② 계약기간
-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시설급여 (30일 기준) -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노인요양시설 개정법)

구분	1일이용료	본인부담금		
		20%	12%	8%
1등급	90,450	542,700	325,620	217,080
2등급	83,910	503,460	302,076	201,378
3~5등급	79,240	475,440	285,264	190,176

※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 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구분		1 회당	30일기준
식사비		4,200	378,000
간식비		1,400	84,000
상급침실료	VIP실(특1인실)	50,000	1,500,000
	1인실	30,000	900,000
	2인실	20,000	600,000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1. 식재료비
 - 2. 이.미용비
 -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7조 (계약해지)

-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제1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 ④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수급자(보호자)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⑤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장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항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톱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 ②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 ③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 ④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 기능훈련
- ⑤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시설장은 직원 및 시설 입소자들에게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며 직무교육의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재난대비훈련교육
(화재예방, 위험물 취급요령, 소화기사용요령,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등)
 2. 응급상황대응교육
 3. 감염예방 및 관리교육

4.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교육(분기별 1회)

5. 종사자 윤리 및 성폭력 예방교육

6. 욕창예방 및 관리교육

7. 낙상예방 및 관리교육

8. 치매예방 및 관리교육

9. 개인정보 보호교육

10. 운영규정 교육

11.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12. 퇴직연금 교육

- ⑦ 시설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수칙 및 교안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필요에 따라 직원 및 입소자의 교육에 활용하게 해야 한다.
- ⑧ 시설에 입소하는 입소자 및 입사하는 직원은 반드시 결핵검사등이 포함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존 입소자(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지원한다.
- ⑨ 시설장은 급식을 행함에 있어서 영양사에 의하여 짜여진 식단에 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양사에 의한 식단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영양사가 있는 기관에서 식단표를 제공받거나 보건소의 식단에 의하여 급식을 행함으로써 시설입소자의 영양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조 (지역사회 자원 활용)

요양시설에서 소재지근처의 의료기관및 소방시설, 종교시설 또는 자원봉사자등 기타의 지역사회의 자원현황을 파악하도록 하여 시설입소자의 응급시 119응급이송지원과 재난상황에 대비하며 의료기관 및 소방시설을 연계하고 종교시설(기독교, 천주교 등)을 연계하여 종교활동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공연 및 말벗등의 정서지원을 입소자의 지역사회의 고립감을 해소하여 서비스의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제3조 (비용의 부담)

- ①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